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

발의연월일: 2020. 6. 15.

발 의 자:윤호중ㆍ윤관석ㆍ신동근

이학영 · 김영배 · 정성호

홍익표 • 서삼석 • 임종성

강선우 · 김민석 · 권칠승

박홍근 · 강훈식 · 조오섭

김수흥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 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도내 11개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3648건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가 46%로 나왔지만 계약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8%인 82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 ④ (생 략)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
	<u>o</u>)
<u><신 설></u>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주
	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u>
	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약비용의 일
	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
	<u>다.</u>